

□ 사업 개요

- 실종에 대비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후 아동 등이 보호자로부터 이탈 시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12. 7. 1. 시행)
 - ※ 등록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
-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 (이하 '지문등 정보'라 한다)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필요성

- 지적·자폐·정신장애인·치매환자는 실종위험이 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인식문제* 등으로 등록률 저조, 개선 필요
 - * 제도 이해 부족(아동 대상 제도로 인식), 등록 기피(정신적 질환 공개) 등
- 사전등록을 할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확인이 가능,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가능하고 사고 등 사전 방지
 - ※ 등록 시 발견소요시간 아동 111배, 장애인 87.5배, 치매환자 12.3배 단축

□ 발견사례

- ▶ <아동> '20. 2. 12. 15:25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 소재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울고 있는 남아(5세, 아동)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파출소에 신고, 사전 등록 자료 활용하여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
- ▶ <지적 장애인> '20. 3. 5. 11:41경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18세, 남)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하여 45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
- ▶ <치매 환자> '20. 4. 7. 17:32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경주역 주변에서 길을 잃은 노인(82세, 여, 치매환자)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파출소에 인계, 사전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11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사전등록 신청

- ‘신규’신청자 위주로 받고 있으며, ‘기존’ 등록자도 변경신청 가능
- 기존 사전등록 정보를 보호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다운 ⇨ 사전등록신청·확인 선택 ⇨ 휴대폰 본인확인 ⇨ 대상자 선택 ⇨ 정보 변경
 - ※ 「사진」, 「신체 특징」 등 ‘지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변경 가능

② 사전등록 신청서 입력시 주의점(필독★)

- *표시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등)은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표시가 없는 곳(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그 밖의 특징, 그 밖의 정보)은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며, 입력시에는 **확연히 눈에 띄는 특징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세요**
- 선택표시는 각 항목의 앞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음
 - ※ 작성 예) []비만 []건장 []보통 []왜소 []특이
- 인터넷 ‘안전Dream’, 안전드림 앱에서 기본사항을 직접 등록하신 경우 상단에 △ 등록 여부 표시 △ 신청인 및 아동등의 성명만 기입
⇨ 시설 방문 현장등록 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등록대상(아동등) 정보 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 항목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예) 성명, 주민번호, 대상구분,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 신청인(부모)의 정보 중 기본정보(박스 진하게 처리된 곳)는 필수 항목이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세요
 - 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 ⇨ 아동등의 정보 필수 항목(10개 항목)과 신청인(보호자)의 정보(5개 항목)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 주시면 방문 등록해 드립니다.

[별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 등록대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국적, 나이
신청인(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과의 관계
 - 선택 : 지문, 얼굴 사진, 흉터, 점 또는 문신, 실종(가출)경력, 주로 다니는 장소, 기타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동의 거부 시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하며, 선택 항목은 동의 거부 시에도 사전등록은 가능하나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검색(활용) 정보가 없거나 적어 신속한 신원확인 및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음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 ◇ 수집·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로 △ 사전등록 시 신청인 및 아동등이 보호자 및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원확인 및 실종아동등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확인 △ 실종신고 시 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기 발견 도모를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 및 보호자(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보유 및 이용 기간(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의 거부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음

3.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 ◇ 수집·이용 목적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 ◇ 민감정보(수집 항목) : 등록대상자의 건강(신체장애, 병력)
- ◇ 보유 및 이용기간(폐기 前 까지)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 폐기
 -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 폐기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사전등록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등록대상이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거부 시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없음

<보호자용>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2020년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 안내



등록하세요!

Q 누구를 등록하나요?

- ✓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등록대상입니다.

Q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 ✓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Q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 ✓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 ✓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요양시설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주, 특수학교 선생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 드립니다.

Q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 홈페이지와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Q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 ✓ 실종 '아동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

- ✓ 사전등록 정보는 '키보드 보안' 등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2020년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 안내



■ 제도 개요

- ✓ 경찰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2)
 - ※ 등록대상(아동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 등록방법 : 보호자 직접등록(안전드림 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 방문등록
- ✓ 특히,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어린이집 등 아동운집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 성과

- ✓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 총 455만명(아동 431만, 장애·치매 24만)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 개요

경찰청에서는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11월간 서울·경기·충청(세종포함)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현장등록방문의 대상은 실질적인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체등록은 '①방문을 희망하는 시설 대상 신청접수 ⇒ ②방문일정 조율 ⇒ ③등록신청서 및 안내문 배부 ⇒ ④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 사전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조 요청사항

- ✓ 사전등록제는 실종 및 범죄로부터 '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통해 자가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필수 대상자의 등록률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등록 기간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 ✓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및 투입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담당 업무별 대상 '아동등'의 보호자 및 특히 시설장(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참여를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등록 건수가 낮은 지적장애인과 미방문 시설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체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천해 주시면 사업기간 중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2020년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사업 안내



Q '사전등록제' 및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이란?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 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특히 실종에 취약한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등록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 실종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찾아가는 단체등록』 등을 통해 총 455만명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Q 단체등록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 ~ 11월간 서울·경기·충청·세종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등록신청접수는 6월 15일 ~ 11월 8일까지, 현장방문 단체등록은 6월 29일 ~ 11월 20일입니다.

Q 우리 시설(학교)에 있는 모든 '아동등'을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하지 않는 신규 아동등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아동등의 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에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청서 제출 필요)

원장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 '사전등록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등을 실종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더 많은 아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단체등록은 보호자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설장님,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찰청에서는 인원 등을 고려, 각 시설별 1회 방문에 2~3시간 이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시설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전등록제 및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이란?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 3가지:

- 1) 보호자가 모바일 ‘안전드림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 2)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가능)
- 3) “찾아가는 단체등록”시 신청 참여

- 특히,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아동등 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단체등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 방문지역은 매년 등록대상자 및 등록률 현황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Q. 등록 대상이 어떻게 되며,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입니다.
※ 20년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대상은 실종에 취약한 **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입니다.
- 등록하는 정보는 “아동등”의 인적사항 및 지문, 사진, 신체특징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Q. 단체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요?

- **6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경기·충청(세종 포함)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체등록은 1)방문을 희망하는 시설 대상 신청 접수, 2)방문일정 조율, 3)신청서 및 안내문 배부, 4)일정에 맞추어 방문, 사전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신청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접수 **6. 15. ~ 11. 8.**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6. 29. ~ 11. 20.(5개월)** 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급·학교, 요양시설 등에서 사업장 콜센터 (070-7872-7741~7)로 접수하시면, 방문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현장방문 기간'에만 사전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 만약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모바일 '안전드림'앱과 안전드림'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등록이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Q.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에 참여해야 하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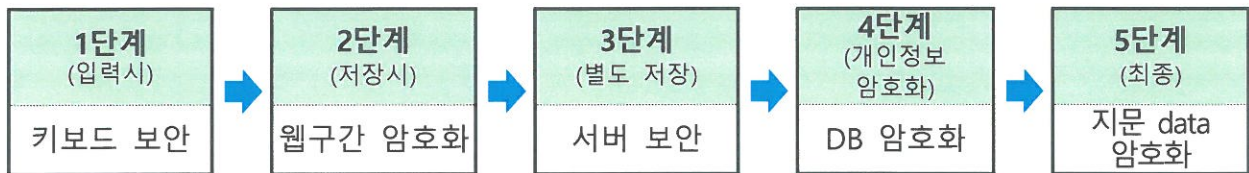
-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신청서 작성)를 받아 등록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인력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지 않은 "아동등"은 사전등록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했다라도, 지문 등록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신청서상 신체특징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그 의사에 반해 아동등의 지문이나 신체특징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실종아동을 찾나요?

-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1)실종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2)주변을 찾아다니느라 경찰 신고를 늦게 하는 상황에서도 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사건사고 등 2차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한데, 유출 위험은 없나요?

-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또한, 등록된 정보는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